#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

제정: 2012. 1. 1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(이하“위원회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활동의 원칙,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하고 병원 전산화 계획 및 홈페이지 관리, 전산장비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3조(기능)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 한다.

1.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에 관한사항
2. 개인정보보호 조직에 관한사항
3. 업무위탁 및 외부자 보안관리에 관한사항
4.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인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공에 관한사항
6.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조치에 관한사항
7.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사항
8. 보안사고 관리에 관한사항
9. 전산화 계획 및 주요 전산장비, 소프트웨어 도입에 관한사항
10.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사항
11.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관련 업무에 관한사항
12. 기타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병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중임 할 수 있다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 보관한다.

④ 필요한 경우 외부에 자문을 구 할 수 있다.

제7조(주관부서 및 간사) ① 이 위원회 운영은 사무국 원무과에서 주관한다

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8조(보고) 이 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

한 후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